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82
----------	-------

발의연월일 : 2026. 4. 29.

발 의 자 : 이종배 · 이현승 · 이인선
김승수 · 정동만 · 박충권
서지영 · 최보윤 · 이만희
엄태영 · 김성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사업화 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단계를 아우르는 수소산업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업종전환 또는 창업을 통하여 수소전문기업이 되고자 하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업화지원,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① 정부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하고자 하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업화,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수소전문기업의 범위 및 지원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0조의2(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① 정부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하고거나, 업종전환 또는 창업을 통하여 수소전문기업이 되고자 하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업화,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예비수소전문기업의 범위 및 지원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